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집중행진 및 보수 양당 요구안 전달  
산재사망 노동자 영정 들고 헛 상여 행진**

- 일시 : 2022.3.03(목) 14:00
- 장소 : 경총 앞 (약식 집회 후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앞까지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 2022년 사고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94명이 넘고, 급성중독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75%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3월2일 건설안전특별법을 호도하는 조사결과 발표로 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광주에서 노동자, 시민이 죽어 나갔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처벌이나 영업정지는커녕 계속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2개월 만에 7명이 죽었습니다. 경기, 인천, 강원, 제주, 경남, 충남 전국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동>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양당의 대선후보 공약에는 여천NCC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국가산단 안전 대책은 찾아 볼 수 없고, 참사의 빈소와 장례식장은 대선후보의 유세 코스쯤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경총을 규탄하고, 영정과 상여 행진을 진행하여 중대재해 대책없는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규탄하며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진행순서

- 경총 앞 집회
  -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 김갑진 노안부장
- 행진
  - 299개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 헛 상여 행진
  - 경총- 공덕역- 국민의 당사- 더불어 민주당사
-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요구안 전달

- 국민의 힘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안보위 위원장
- 더불어 민주당 앞 :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
- 상징의식 : 안전화에 국화 놓기, 요구안 전달하기

### 3. 중심 요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 재벌 곳간, 대표이사 사수에만 급급한 경총을 규탄한다.
- 건설노동자 다 죽는다.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하라
- 여천NCC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 국가 산단 안전 대책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하라
- 국가산단 안전대책 국가가 책임져라.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개정하라
- 노동안전 대책 없는 보수양당 후보 규탄한다.
-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국가가 보장하라

### 4. 경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경총은 <처벌보다 예방이 필요하다, 처벌중심의 법 제정 반대> 주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경총은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산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지속 반대해 왔음.
- 경총은 건설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사업주 단체를 집결시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반대, 무력화 시도에 가장 앞장서 왔음. 한국의 산재사망 처벌이 외국보다 강하다는 허위주장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며 법을 호도하고 있어, 기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보다, 법률자문 계약에 나서게 하여 대형 로펌의 마케팅만 강화시켜 주었음.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법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사고원인을 찾고 개선 노력을 하기 보다, 대형로펌과 위헌소송 준비에 열을 올리게 하고 있음.
- 3월2일 경총은 건설협회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의 반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 중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로 충분하다는 것을 들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의 실체를 호도하는 조사임.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로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이 없음.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학동참사나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참사는 발주, 설계, 시공, 감리의 각 단계에서 안전을 무시한 각종 불법 사항이 드러났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발주, 설계, 감리 등에 대한 처벌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세부내용은 없이 모호하다, 중복이다 라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 경총과 건설협회의 조사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공사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 책임부과’ 가 일순위로 뽑힘. 이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취지이며, 법 내용이다. 건설기업의 각 주체들이 제기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이 건설안

전특별법 입에도 법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 경총, 건설협회의 행태임.

## 5.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여천NCC 산재 참사 빈소와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함. 그러나, 노동자 과실 문제를 사고원인으로 언급하거나, 국민의 힘도 참여하여 법안심의를 진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언급하기도 한 바 있음. 노동시민사회와 산재피해자 유족이 개최하고 절절이 참여를 호소한 ‘대선패트 초청 생명안전 토론회’ ‘대선패트 생명안전 약속식’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불참했을 뿐 아니라 질의서 답변조차 하지 않음.
- 3월2일 개최된 대선패트자 토론회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담당한 산재수사에서는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진상조사가 왜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매년 2,400명이 죽어 나가는 산업재해에 대해 형사 처벌은 2%도 안 되고 경영책임자 처벌은 전무했던 것이 기간의 현실이다. 평균 벌금이 420만원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중대재해의 수사에서 노동부의 기소의견도 무시하고 불기소 처리를 남발하고, 원청이나 경영책임자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검찰이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에서 발주자도 처벌하지 않은 재판결과가 버젓이 있는데도, 엄정하게 수사했다는 궤변을 이어가고 있음
- 정치공방으로 날을 새는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노동자’ ‘노동안전’ ‘시민안전’ 의제와 공약은 실종되었음.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산업재해 관련 공약은 <취약부문 산재예방 행정역량 집중,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역량강화>로 양적으로도 빈약하고, 내용적으로도 개선방안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이나,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국가산단안전대책’은 공약에 언급조차 없음.

## 6.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 문재인 정부는 ‘사고 산재사망 절반감소’를 추진했으나 실패했음, 지난 대선 공약에 ‘중대 사고 기업처벌법 제정’을 명시했으나, 전혀 추진하지 않아, 노동자 시민이 10만 동의청원과 산재 피해자 유족의 농성으로 ‘반쪽짜리 법안’으로 제정되었음
- 산재 노동자 당사자이기도 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 붕괴참사 현장이나, 국회 전시장에서 산재피해자 유족들과의 만남에서 ‘제 몸에 박혀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여천NCC 참사 빈소를 방문하여 ‘국가산단안전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바도 있음

-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날을 새는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노동자’ ‘노동안전’ ‘시민안전’ 의제와 공약은 실종되었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국회에 장기 표류하고 있으며,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국가산단안전대책’은 공약에 언급조차 없음.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노동안전 공약은 ‘OECD 국가 평균으로 산재감소’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출되고 있음.

## 7. 민주노총 요구

### 1) 여천 NCC 폭발참사 및 중대재해 긴급 현안 대책

#### (1) 여천 NCC 참사 민관합동조사단등 중대재해 조사 노동자 참여 보장

- 여천NCC 참사 재해조사에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재해조사에 원하청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보장.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사고원인과 구조적 조직적 문제 조사.
- 노동부, 경찰의 조사 중간보고 및 결과 설명회 개최 및 참여 보장
- 여천NCC 작업중지명령 해제 과정에 원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보장 및 작업중지 해제심의 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 여천NCC 전 현장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명령및 원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한 국가산단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위원회 구성 및 대책 마련
- 국가산단의 노후설비 실태, 사고현황, 유지보수 실태조사, 국가산단의 도급계약, 원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국가산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 제도 실태 조사
- 국가산단 및 산업단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

####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엄정한 집행과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 2) 중대재해 대책 요구

-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첨부: 2022년 민주노총 대통령선거 노동안전 대선 요구안

# 민주노총 대통령 선거 노동안전 요구안

## 1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음. 산업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학교, 공공행정, 사무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되고 있음. 특히, 특수고용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차등 적용되고 있음
- 방문 노동자, 이동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산안법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방안이 없음.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가 고정 사업장의 작업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 노동자, 이동 노동자에게는 적용 범조를 찾기 어려움
- 영국, 독일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고용 노동자도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대다수 국가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업종과 규모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전면 적용하고 있음.

### 2. 요구

- 1) 산업안전보건법의 차등 적용을 규정한 2조 폐지
- 2)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개정하고, 전면 적용
- 3) 방문노동자, 이동노동자 등 직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대책 법제화 및 이행방안 마련

## 2 재해 및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 1.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사고사망 733명 중 혼자 작업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353명으로 48.16%에 달함. 이중 제조업이 114명이고, 건설업은 92명임.

[ 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 동시 작업인원 ]

구분	총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운수창고	기타
총계	733	1	190	308	1	37	191
혼자	353	4	114	92	1	26	116

-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와 같이 재해다발의 원인은 위험업무의 2인1조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매년 520명의 과로사망, 근골격계 질환등 산업재해의 주요한 원인은 현장의 적정인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강제가 없음.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보가 중요하나, 현행의 안전보건 전문인력 기준은 아예 선임적용제외가 많고, 수 천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2명 이내만 선임기준임. 동일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정기준도 없음.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보가 중요하나, 현행의 안전보건 전문인력 기준은 아예 선임적용제외가 많고, 수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2명 이내만 선임기준임. 동일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정기준도 없음. 2,000여 개의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에 2명의 안전관리자, 2명의 보건관리자만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으로 안전관련 조직기구표만 있고, 전문인력이나 적정인력은 확보하지 않고 있음.
- 산업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수십 년간의 정부의 1회성 감독강화와 예산지원 대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확인되고 있음.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용 제외되어 있음. 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공공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일회성 지원대책이 아닌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과 공공성이 있는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중소기업의 안전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함.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나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기준이 없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기준은 조정되지 않아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음
- 조선업보다 높은 노동 강도인 학교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의 배치기준은 노동강도가 아니라 예산대비 기준으로 선정되어 있어 사고 다발과 근골격계 질환의 다발로 이어지고 있음.

- 재해 및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의 법제화는 산재감소뿐 아니라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임. 매년 520명에 달하는 과로사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제도개선과 더불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로사 예방법 제정이 필요함. 과로사 예방법 제정은 고용구조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과 확대로 이어질 것임.
- 매년 산재보상으로만 520명의 과로사 발생. 외국 사례에서는 공무원, 교사 등의 과로사 발생 비율이 높으나 합산 통계가 없음. 1일 16시간, 17시간 장시간 운전을 하는 버스, 화물운송 노동자나 과로사가 연속 발생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970만 명,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자 112만 명, 재량노동자 200만 명, 감시단속 노동자 100만 명 등 노동시간 관련 규제의 적용제외 대상이 너무 많음.
- 과로사 예방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장 중요한 방안임.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은 실질 이행되거나 위반 시 처벌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게임산업의 크런치 노동은 IT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고, 방송, 영화부문의 과로사, 과로자살의 다발도 산업적 특성과 고용 및 계약의 구조와 관행이 주요 원인임. 이에 과로사 실태에 입각한 과로사 예방법 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본에서 제정된 과로사 예방법을 한국의 고용구조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각종 법 제도개선과 조치에 대한 강력한 강제성을 보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화물운송, 택배 및 배달 및 운수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는 적정운임 보장이 근본원인이며 이는 노동자의 과로사망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시민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영화 방송등 문화예술업계, 게임산업 노동자들의 1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산업전반의 계약구조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2. 요구

### 1) 위험업무 2인1조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제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 처리작업의 3인 1조, 코샤 가이드, 장비 매뉴얼, 한국전력공사의 활선 작업 매뉴얼 등 각종 하위 규정에 있는 위험 작업의 신호수 감시자 고용,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등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작동, 운전 등 위험작업의 2인1조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제화

-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심야 단독 작업 금지, 검침 등 고객 방문 작업의 2인 1조 작업 법제화
- 지붕 작업,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 등 위험작업의 2인1조 작업 법제화

## 2) 과로사 예방 및 사고감소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 다발의 위험이 있는 중량물 운반, 일정 기준 이상의 가전제품 운반 및 설치, 단체 급식 조리 업무 등의 적정인력 기준 제시 및 법제화

## 3)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기준 산정 및 확대

- 현행은 고용계약별,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규모별 선임기준이 높음. 이에 100인 미만 하청 기업이 수백 개 있는 현장도 원청의 고용인원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만 하면 됨.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선임의무도 없음.
-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사고성 재해나 화학물질, 감염병 등 각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발생하고, 전체 사업장의 종사자 모두에게 발생함.
- 이에 파견,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 종사자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함.
- 사업장의 전체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력 기준을 수립하고,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기준으로 대폭 확대함(현행은 수천 명 사업장도, 수만 명 사업장도 2명 이상이면 충족하도록 되어 있음).
-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정규직 직접 고용을 법제화 : 겸직 금지 법제화  
사업장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선임 의무만 부여하고,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1개월에 1회 형식 점검을 받거나, 겸직 허용으로 예방업무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업무경험도 쌓이지 않고 있음.
- 기업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의 각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허용 등 규제완화 폐지 및 원상회복

## 4) 중소기업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공공성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업종, 규모 무관하게 전면 적용
- 30인 혹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허용
- 1명의 안전 관리자가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복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활동을 하도록 함. 동일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 공단이 공동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공단에 입주해 있는 일정 숫자의 기업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며, 정부가 예방기금으로 공동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 제조업은 산업단지 공단. 아파트형 공장, 도심형 제조업, 00시장 등 도소매업, 00 거리 등 음식업 등으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체계 구성. 지역 노동청, 지자체의 일정한 협의구조로 운영 및 관리 진행.

- 중소기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으로 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짐.

#### 5)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확대

-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전 업종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예방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일터괴롭힘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
- 사업장별로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부여, 사업장 보건관리자 자격, 관련 교육 실시 의무 명확화 등 법제화 및 정책 수립

## 3 위험의 외주화 금지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에 도급금지가 도입되었으나, 화학물질 중심으로 도입되어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을 비롯해 반복적 사망이 지속되는 조선업도 도급, 재하도급이 다발하고 있음. 국가인 권위에서 도급금지 대상 범위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도급 금지 대상 업종인 경우에도 직접 고용 전환하면서 기간제, 단기 고용, 촉탁직 고용 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당진 현대제철소 도급 처리작업도 기간제 고용으로 전환하고, 조선업등에서도 물량팀은 유지하면서 오히려 단기계약 등 쪼개기 계약으로 1차 하청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전환 시키고 있음.

### 2. 요구

#### 1)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확대

- 철도 지하철 등 궤도의 선로보수 등 위험작업 도급금지
- 조선업 도급승인 대상 확대로 재 하도급 금지
- 발전소, 방사선 취급 업무 등 위험작업 도급금지
- 도급금지 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확대 심의 상설기구 설치

#### 2) 유해위험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 기간제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기간제법 개정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기간제법 개정

## 4 **작업중지권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처벌조항이 없고,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작업거부권이 없음.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위험작업 지시에 대한 거부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음.
- 폭염과 한랭 및 한파로 인한 노동자 피해가 심각하고, 지속되고 있음. 악천후 기후에 대한 작업중지는 정부의 권고로만 되고 있어 실질 이행되지 않고 있음.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기준도 법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기후위기의 가속화에 대한 노동자 안전 대책이 필요함. 작업중지기준 및 법제화 뿐만 아니라, 작업중지에 따르는 노동자의 임금보전과 원하청 계약의 손실보장에 대한 법제화로 작업중지가 현실화 되도록 해야함.
- 노동자의 사업장 산재예방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로 규모별로 적용제외가 남발되고 있음.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차등적용으로 학교는 3개 직종만, 공공행정은 6개 직종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출입권도 제한되는 등 권한도 보장되지 않음. 산보위,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서 노사가 참여한 개선안은 실질 이행도 강제되지 않고 있음
- 사업장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참여제도는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고조사 참여, 원청과 구성하는 산보위도 법적 보장이 안 되고 있음.
-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가 제한적이고, 작업중지 해제 시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 해제가 남발되고 있음.

### 2. 요구

#### 1)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 위험작업 작업중지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형사 처벌 도입
- 폭염, 한랭, 한파, 미세먼지 등 악천후 노동자 작업중지 기준 마련 및 법제화
-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손실, 원하청 계약의 손실 보장 법제화로 작업중지권 현실화

## 2) 노동자 참여 보장

- 산업안전보위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확대 및 작업중지권, 현장 출입권 보장
- 산보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 대표의 현장점검 등 활동시간 보장 법제화
- 하청 노동자, 소수 노조의 노동부 사고조사, 특별근로감독 참여 보장. 원하청 산보위 법제화

## 3) 노동부 작업중지명령 개정

-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 (화상사고, 고열작업등 사망에 대한 기준 정비),
- 사망사고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 법제화
-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전 심의 의결 명시
-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이행 확인 후 작업중지 해제로 명시

# 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1. 현황 및 문제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및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로 중대재해의 80%가 사실상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의 30%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편법이 남발되고 있음. 배달 등 기업에서 원청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설립하고,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로 수 백명을 고용하는 기업형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공무원 처벌 조항이 도입되지 못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반복 발생을 차단하기 어렵게 되었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도입되지 못하여 수사, 기소만 진행되고 재판에서 실질적인 판결의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법 제정으로 기업들은 예방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소송 대비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핵심원인은 발주처의 책임강화임. 발주, 설계, 시공, 감

리 각 주체가 안전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 특별법 국회 지속 계류되어 있음.

## 2. 요구

1)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 5인 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 등 삭제 전면 적용

-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조항, 양형절차 특례 도입

- 건설, 조선업등의 발주처 공기단축 처벌. 건설현장 인접 장소 사고등 적용 대상 확대

## 6 건강권 보장을 위한 측정 검진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과 인정이 줄을 잇고 있음.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기 환경에도 기간 동안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은 실시된 바 없으며, 현행의 기준에는 조리 흡에 대한 법적 기준도 없음.

○ 택배, 건설기계 등 다수 사업장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음.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건설기계 노동자의 분진 폐질환 방지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검진 제도화가 필요함.

○ 건설업, 조선업 등 일용직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직종 노동자는 1년을 주기로 하는 정기검진의 실시율이 매우 낮고, 사업장을 이동하므로 검진의 사후관리의 의미가 낮음. 업종 특성으로 단기 임시 고용이 반복되는 직종의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제도가 필요함.

○ 직업성 질병의 70%에 달하고, 적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근골격계 질환등 노동자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의 추가 확대가 필요함

○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는 사업장의 개선 조치가 이행 되지 않고, 이에 대한 감독 및 처벌도 없어 검진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2. 요구

- 1)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 2) 특수고용노동자 건강검진 실시 법제화 및 확대
- 3) 건설, 조선업등 직종별 건강검진제도 도입
- 4) 근골격계 질환 등 노동자에게 필요한 검진항목 확대
- 5) 측정과 검진 결과에 따른 사업장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 7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보상과 재활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임. 그러나, 한국의 산재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해외파견 노동자, 농업 선원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음. 특수고용노동자는 전속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리운전 기사 노동자는 법 적용 4년동안 2명만 적용되었음.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 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특수고용, 플랫폼 산재보험 적용범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휴업급여 최저보상 기준 별도 적용 등 차등 적용방안이 제출되고 있고, 적용직종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 시키고 있음.
- 산재로 승인받은 노동자의 치료비 개인부담 비율이 높아, 화상사고, 직업성 암등 중중인 경우에는 치료비 개인 부담 비율이 높음.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노동자가 치료비용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 독일, 프랑스 등에서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개인 부담은 없음
- 산재 노동자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직업재활, 사회재활, 심리 재활등 적절한 재활 이후 사업장에 복귀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재활 분야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산재 노동자의 적정 치료, 재활, 복귀가 필요하나,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재병원은 인력과 예산 투자 없이 방치되고 산재노동자를 위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 요구

- 1)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차등 없이 전면 적용
- 2) 농업, 어업 노동자 산재보험 통합 적용
- 3) 산재 노동자 치료비 부담 제로화
- 4) 재활사업 활성화 및 산재병원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집중 투자 및 역할 강화

## 8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및 심사승인제도 개혁

### 1.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등 감염성 질환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집단 노동을 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의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직업병 인정기준은 병원과 집단 수용시설의 감염성 질환만 법제화 되어 있음.
- 건설, 조선, 폐기물 처리등 종사 노동자의 석면 폐암이 심각한 상황이나 직업력 증명이 어려워 업무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의 일시 보상만 되고 있음. 타이어등 고무제조업의 직업성 암, 학교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폐암등이 직업병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고, 산재신청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직업병 인정기준의 확대가 상시적,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법적 기구 마련이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제기되었고, 수년에 걸친 노동계의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상설심의기구> 제도화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음
- 재해조사, 역학조사, 질병판정위원회 심사승인등 직업병 산재심사승인의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어, 산재신청 노동자는 승인시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뒤 산재인정을 받기도 함. 다발하는 질병은 업무기간만 확인되어 산재승인을 하는 <추정의 원칙> 이 확대되고 법제화가 필요함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보상되는 산업재해는 직업병 인정기준이 협소하거나, 심사승인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보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음. 선원 노동자의 경우는 사업주 단체가 심사승인을 하고 있어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음.
- ILO 가입 국가 대부분이 질병 휴가를 도입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병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사고성 재해는 승인률이 95%를 넘고 있음에도 산재심사승인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산재승인 여부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됨.

- 산재신청과 승인에 평균 170일이 소요되고, 직업성 암의 경우는 2-3년이 소요되는 현행의 산재심사 승인 제도는 노동자의 조기 치료는 불가능하고, 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 상병 수당 도입이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 노동자의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임금 손실과 생활 보장은 휴업급여나 상병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산재승인여부에 과도한 행정력을 낭발할 필요가 없음.
- 이에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 결정 이전에 치료와 휴업급여를 선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상병 수당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을 선 지급하고, 휴업급여나 상병수당 중 해당되는 제도로 정산하는 것으로 운영하며, 제도에 따른 보상차액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성 할 수 있음. 그러나, 상병 수당 도입 이전에도 산재심사승인 여부에 따른 노동자 생계 파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승인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2. 요구

- 1) 감염성 질환, 급식 조리사 폐암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2)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정기적인 심의구조 법제화
- 3) 직업병 인정 추정 원칙 적용 확대 및 법제화
- 4)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업병 인정기준 및 심사승인제도 개혁
- 5) 산재승인 전 치료와 보상을 하는 대책 마련 (선보장 후평가)

# 9 과로사 예방법 제정 및 대책 수립

## 1.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산재보상으로만 520명의 과로사 발생. 외국 사례에서는 공무원, 교사 등의 과로사 발생 비율이 높으나 합산 통계가 없음. 1일 16시간, 17시간 장시간 운전을 하는 버스, 화물운송 노동자나 과로사가 연속 발생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970만 명,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자 112만 명, 재량노동자 200만 명, 감시단속 노동자 100만 명 등 노동시간 관련 규제의 적용제외 대

상이 너무 많음.

- 과로사 예방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장 중요한 방안임.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은 실질 이행되거나 위반 시 처벌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등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게임산업의 크런치 노동은 IT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고, 방송, 영화부문의 과로사, 과로자살의 다발도 산업적 특성과 고용 및 계약의 구조와 관행이 주요 원인임. 이에 과로사 실태에 입각한 과로사 예방법 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본에서 제정된 과로사 예방법을 한국의 고용구조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각종 법 제도개선과 조치에 대한 강력한 강제성을 보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화물운송, 택배 및 배달 및 운수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는 적정운임 보장이 근본원인이며 이는 노동자의 과로사망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시민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영화 방송등 문화예술업계, 게임산업 노동자들의 1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산업전반의 계약구조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협이 치명적 위협으로 되고 있어 정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업무로 인한 노동자의 자살이 연간 600명에 달하고 있음.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으로 노동자 시민의 우울증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대책과 법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 2. 요구

### 1) 과로사 예방법 제정

### 2) 과로사 실태조사 및 산업별 과로사를 실질적으로 근절하는 정책 방안 수립

- 과로사 예방을 위한 노동자, 피해자 유족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
-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근기법 개정 뿐 아니라 산업구조 및 고용과 계약문제를 포괄하는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 이행하도록 강제
- 공무원, 병원, 영화 방송, 화물, 택시, 택배 등 과로사가 집중되는 업종의 산업구조 문제와 연동된 실질 노동시간 단축 업종별 대책 마련 및 추진
- 업종별 대책 권고에 대한 범 정부의 이행 강제

### 3)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 산재보상 및 재해보상 확대 및 유족 지원 대책 수립

## 10 감독행정 개혁 및 산업안전보건청 수립

###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해서는 노동부 감독행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함.
  - 재해예방 감독, 기획감독, 직업성 질병 감소를 위한 보건감독의 질을 제고해야 함
  - 감독행정 개혁의 핵심인 노동자 참여와 감독 이후 사업장 개선대책 이행 강화임.
  - 감독행정 개혁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감독의 질 제고임. 감독 물량 증가에만 착목하고 있는 현행 감독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 감독행정의 내용적 변화 없이, 노동부 내부의 양적 확대 일부만 진행된 산업안전보건본부 발족으로는 재해예방과 감소를 추진 할 수 없음. 현행의 개편은 중대재해 감독과 수사 진행으로 한정적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임.
  -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실물과 사업장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전략적 사회적 논의와 결정을 통한 안전보건 감독이 진행되어야 함. 이를 전담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노사동수의 이사회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청 사업 전반에 대한 노동자 참여 전면적 확대를 현장에 기초한 감독행정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함.

### 2. 요구

- 1) 감독행정 개혁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 2) 산업안전보건청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감독행정 전반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